
한국마사회 정관

제1장 총칙 201-3

- 제1조 목적
- 제2조 설립과 명칭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 제4조 정관변경
- 제5조 공고방법

제2장 임원과 직원

- 제6조 임원
- 제7조 임원의 임면
- 제7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201-4
- 제7조의3 경영계약 등
- 제8조 임원의 임기
- 제9조 임원의 직무
-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 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201-5
- 제12조 감사위원회의 대표권
- 제13조 임원의 보수와 직원의 급여 등
- 제14조 조직
- 제15조 직원의 임면
- 제16조 대리인의 선임
- 제17조 자문위원·고문 및 촉탁

제3장 이사회

- 제18조 설치와 구성
- 제18조의2 선임비상임이사
- 제19조 회의 201-6

제20조	의결사항 등	
제20조의2	해임요청 등	
제21조	의결방법	
제21조의2	이사회 내 위원회	
제21조의3	감사위원회	201-7
제22조	삭 제	
제23조	관계인의 의견진술	
제24조	의사록	
제25조	이사회규정	

제4장 사업의 집행

제26조	사업의 범위	
제27조	규정	201-8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8조	사업연도	
제29조	자본금	
제30조	자산의 조성	
제31조	사용료 등	
제32조	회계	
제33조	사업계획	
제34조	결산	
제35조	손익금의 처리	
제35조의2	경영공시	201-9
제35조의3	고객현장	
제36조	자금차입	
제37조	자금의 운용	
제38조	재산처분의 제한	

제6장 보칙

제39조	재단법인의 설치·운영	
------	-------------	--

부칙

한국마사회 정관 [1945. 3.26]

제정	1947. 2. 7	1996.11. 1
	1970. 8. 1	2001.11. 7
	1971. 3.23	2002.12.31
	1971.12. 3	2004.12.31
	1979. 1. 1	2005. 9.15
	1986. 7. 3	2007. 5. 8
	1990. 8. 7	2008. 9. 9
	1992. 1.24	2009.12.14
	1993.11.16	2010.12.16
	1995.12.29	2011. 7.11
	1996.10. 9	2015. 8.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한국마사회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9.15, '11.7.11, '15.8.27)

제2조(설립과 명칭) 이회는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며 한국마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는 Korea Racing Authority(약칭 KRA)라 한다.(개정 '01.11.7, '07.5.8, '09.12.14)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경기도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둔다.(개정 '05.9.15, '09.12.14)

제4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01.11.7, '08.9.9, '09.12.14, '15.8.27)

제5조(광고방법) 본회의 광고는 주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광고는 지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회장 또는 지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09.12.14)

제2장 임원과 직원(개정 '09.12.14)

제6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09.12.14, '11.7.11)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상임이사 5명 이내
4. 비상임이사 8명 이내
5. 삭제('11.7.11)

제7조(임원의 임면) ① 회장은 제7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08.9.9, '09.12.14, '15.8.27)

②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1조의3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이하 “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09.12.14, '10.12.16, '11.7.11)

③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을 제외한다)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개정 '08.9.9)

④ 삭제('11.7.11)

⑤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신설 '93.11.16, 개정 '09.12.14)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본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 회장 후보자와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개정 '09.12.14, '10.12.16)

②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09.12.14)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회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본회의 비상임이사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09.12.14)

④ 제3항에 따라 선임되는 위원의 정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되,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개정 '09.12.14)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07.5.8, 개정 '09.12.14)

⑥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인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개정 '09.12.14)

⑦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개정 '09.12.14) [본조개정 '07.5.8]

제7조의3(경영계약 등) ① 회장은 본회의 업무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08.9.9, '15.8.27)

② 제1항에 따른 경영계약에는 회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09.12.14)

③ 회장은 부회장 및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해당 부회장 및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개정 '07.5.8, '11.7.11)

제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회장·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09.12.14, '11.7.11)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09.12.14)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07.5.8)

② 부회장과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 업무를 집행한다.(개정 '05.9.15, '09.12.14, '11.7.11)

③ 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과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상임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05.9.15, '09.12.14)

④ 이사는 이사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개정 '09.12.14)

⑤ 비상임이사는 회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신설 '05.9.15, 개정 '07.5.8, '09.12.14)

⑥ 삭 제('11.7.11)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09.12.14)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09.12.14)

4. 본회에 등록된 마주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신설 '02.12.31, 개정 '09.12.14)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신설 '02.12.31, 개정 '09.12.14)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본회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개정 '07.5.8, '09.12.14)

② 본회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신설 '07.5.8)

제12조(감사위원회의 대표권) ① 본회의 이익과 회장·부회장·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가 본회를 대표한다.(개정 '09.12.14, '11.7.11)

② 본회와 회장·부회장·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09.12.14)

제13조(임원의 보수와 직원의 급여 등) ① 본회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임원보수규정」과 「급여규정」 등에서 정하는 보수 또는 급여, 퇴직금과 그 밖에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받는다.(개정 '92.1.24, '09.12.14)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05.9.15, 개정 '09.12.14)

③ 비상임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제14조(조직) ① 본회의 조직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개정 '09.12.14)

② 제1항의 직제는 회장이 정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직원의 임면) 본회의 직원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면한다.(개정 '09.12.14)

제16조(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본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09.12.14)

제17조(자문위원·고문 및 촉탁)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고문 및 촉탁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 및 고문은 본회의 사업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고문 및 촉탁의 보수는 「급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09.12.14)

[본조개정 '92.1.24]

제3장 이사회

제18조(설치와 구성) ① 본회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되, 제6조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수가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개정 '07.5.8, '09.12.14)

② 이사회 의장은 제18조의2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가 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05.9.15, '07.5.8, '09.12.14, '10.12.16)

제18조의2(선임비상임이사) ① 본회에 선임비상임이사 1명을 둔다.(개정 '09.12.14)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한다.(개정 '10.12.16)

③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전과 그 밖에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 회의를 소집·주관할 수 있다.(개정 '09.12.14)

④ 회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7.5.8]

제19조(회의)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개정 '05.9.15, '09.12.14, '10.12.16, '11.7.11)

제20조(의결사항 등)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01.11.7, '07.5.8, '09.11.14, '11.7.11)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
3. 「정관」의 변경
4.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5. 중요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
6.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7.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8.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입장료(개정 '11.7.11)
9. 잉여금의 처분
10.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11.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12. 임원의 보수
1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4.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07.5.8, 개정 '09.12.14, '10.12.16)

1. 이사회의 의결 내용이 정부의 승인 등으로 변경 또는 취소된 사항
2. 국정감사, 결산 회계감사,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3.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 소요 추계(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11.7.11)
4. 그 밖에 이사회가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개정 '10.12.16)

③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07.5.8)

④ 제1항제5호의 중요 제규정의 범위는 제25조에 따른 「이사회규정」에서 정한다.(개정 '07.5.8, '09.12.14)

제20조의2(해임요청 등) ① 이사회는 회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회장으로서는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회장 해임의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08.9.9, '09.12.14, '15.8.27)

②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명 이상의 연서로 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09.12.14, '11.7.11)

[본조신설 '07.5.8]

제21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05.9.15 '09.12.14 '11.7.11)

② 삭 제('05.9.15)

③ 이사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재적이사에게 서면으로 안건을 의결하게 할 수 있다.(개정 '01.11.7, '05.9.15 '09.12.14, '10.12.16)

1. 법령이 제정 또는 변경되거나 폐지되어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개정 '09.12.14)
2.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이 이미 확정된 단순 집행 사안으로서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개정 '09.12.14)
3. 48시간 이내에 집행되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사항

④ 제13조제2항과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신설 '05.9.15 개정 '09.12.14)

제21조의2(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는 이사회

의 의결로 이사회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신설 '09.12.14)

제21조의3(감사위원회)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비상임이사이어야 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은 「상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개정 '15.8.27)

③ 상임감사위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이사의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비상임이사인 감사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따라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⑥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1.7.11]

제22조 삭 제('11.7.11)

제23조(관계인의 의견진술) 이사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을 이사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09.12.14, '10.12.16)

제24조(의사록) 본회는 이사회에서 토의된 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09.12.14, '11.7.11)

제25조(이사회규정)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개정'01.11.7, '09.12.14)

제4장 사업의 집행

제26조(사업의 범위)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개정 '09.12.14)

1.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업

가. 경마의 개최

나. 말·마주 및 복색의 등록

다. 조교사·기수의 면허 및 장제를 하려는 자의 등록(개정 '09.12.14)

라. 기수의 양성과 훈련(개정 '09.12.14)

2.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업(개정 '11.7.11)

가. 말의 생산·개량증식·육성 및 그 기술개발과 보급(개정 '15.8.27)

나. 말의 이용 촉진 및 지도·장려(개정 '09.12.14, '15.8.27)

다. 말의 방역 및 보건·위생(개정 '09.12.14, '15.8.27)

라. 승마의 보급(신설 '09.11.14)

마. 말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신설 '11.7.11, 개정 '15.8.27)

바. 말의 모형·형상·영상 등을 이용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작·유통·이용(신설 '15.8.27)

사. 말산업과 관련한 전시회·국제회의 등의 개최(신설 '15.8.27)

아.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신설 '15.8.27)

3.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출연(개정 '02.12.31, '09.12.14)

4. 경마장 내 놀이·운동·휴양·공연·전시시설의 설치·운영(개정 '09.12.14, '15.8.27)

5. 가축의 경주를 이용한 경마와 유사한 사업(개정 '09.12.14, '15.8.27)

6.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신설 '05.9.15, 개정 '09.12.14)

7.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신설 '05.9.15, 개정 '09.12.14)

8.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장비 및 말의 임대·판매·수송과 전문기술을 이

용한 용역 등에 관한 국내외에서의 사업
(개정 '05.9.15, '09.12.14, '15.8.27)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출연 및 보조(신설 '05.9.15, 개정 '09.12.14)
- 10. 제1호가목·라목, 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리(임대를 포함한다)(개정 '02.12.31, '05.9.15, '09.12.14)
- 11. 다른 법령에 따라 마사회가 할 수 있는 사업 (개정 '09.12.14, '15.8.27)
- 1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신설 '15.8.27)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신설 '15.8.27)
-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신설 '15.8.27)

제27조(규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회의 결을 받아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09.12.14)

- 1. 경마시행에 관한 사항
 - 2. 회계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보수, 직원의 정수(定數)·임면(任免) 및 급여에 관한 사항
- ② 본회는 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05.9.15 '08.9.9, '15.8.27)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8조(사업연도) 본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09.12.14)

제29조(자본금) 본회의 자본금은 1조 5천억원으로 한다.(개정 '01.11.7, '10.12.16)

제30조(자산의 조성) 본회의 자산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성립한다.(개정 '09.12.14)

- 1. 소유재산 및 이에서 얻는 수입
- 2. 사업에서 얻는 수입
- 3. 그 밖의 수입(개정 '09.12.14)

제31조(사용료 등) 본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수수료 또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 1. 판매 또는 구매알선
- 2. 영조물 및 물건의 사용
- 3. 면허·등록·조사·감정증명 및 출판

제32조(회계) 본회의 회계는 「회계규정」으로 정한다.(개정 '92.1.24, '09.12.14)

제33조(사업계획) 본회는 이사회회의결로 다음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확정 후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개정 '07.5.8, '08.9.9, '15.8.27)
[본조개정 '01.11.7]

제34조(결산) ① 본회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09.12.14).

② 본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각각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08.9.9, '09.12.14, '10.12.16)

- 1. 재무재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개정 '10.12.16)
-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35조(손익금의 처리) ① 본회는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09.12.14)

-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填)(개정 '09.12.14)
- 2. 자본금의 100분의 50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개정 '02.12.31, '05.9.15, '09.12.14)
-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개정 '02.12.31, '05.9.15, '09.12.14, '15.8.27)
- 4. 특별적립금으로 적립(개정 '05.9.15, '09.12.14)

② 본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

졌을 때에는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사업확장적립금,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하여야 한다.(개정 '09.12.14, '15.8.27)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개정 '05.9.15, '09.12.14, '15.8.27)

④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농어업인 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에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개정 '02.12.31, '05.9.15, '09.12.14, '11.7.11)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사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02.12.31, '08.9.9, '09.12.14, '15.8.27)

제35조의2(경영공시) 본회는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에 관한 정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한다.(신설 '01.11.7)

제35조의3(고객헌장) 본회는 대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고객헌장을 제정·시행한다.(신설 '01.11.7)

제36조(자금차입) ① 본회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금을 장기 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개정 '07.5.8, '09.12.14)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의 부족으로 해당 연도에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상환할 수 있다.('09.12.14)

[본조개정 '02.12.31]

제37조(자금의 운용)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09.12.14, '15.8.27)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개정 '05.9.15, '09.12.14, '10.12.16)
- 2. 국·공채(國·公債)와 그 밖에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개정 '01.11.7, '08.9.9, '09.12.14, '15.8.27)

② 삭 제('09.12.14)

제38조(재산처분의 제한) 본회는 소유 부동산을 양여(讓與)·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01.11.7, '08.9.9, '09.12.14, '15.8.27)

제6장 보칙

제39조(재단법인의 설치·운영) 본회는 제35조 제4항의 농어업인 자녀 장학사업과 그 밖에 농어촌사회복지증진에 대한 경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02.12.31, '08.9.9, '09.12.14, '15.8.27)

부칙(1996.10.9)

이 정관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1.1)

이 정관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규정 등의 개정) 본회의 제규정·시행세칙 및 지침중 “문화체육부”를 “농림부”로, “문화체육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개정한다.

부칙(2002.12.31)

부칙(2008.9.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익준비금 및 경마사업확장정립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사회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 “수지결산”을 “결산”으로 하고, 동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금의 차입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제규정 개정) 다른 제규정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1.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기획예산처 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2004.12.3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장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9.12.1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마사업확장적립금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9.15)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16)

이 정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체결한 경영 및 성과에 관한 계약은 개정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으로 본다.

부칙(2011. 7.1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상임감사 폐지 및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적용례) 상임감사 폐지 및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제6조, 제7조제2항, 제12조, 제20조의2제2항, 제

21조의3,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15. 8.27)

이 정관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되, 제26조 제2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